

[별지 제25호서식]

기 관 명

호 발 제 호 19 . . .

수 신 (신고(신청)의무자)

본 적

주 소

제 목 최 고(제2회 이후)

1. 사건본인 ○○○에 대한 ○○신고(신청 또는 추완)를 19 . . . 까지 하도록 최고한 바 있으나, 아직 그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옵기 19 . . . 까지 신고(신청 또는 추완) 하시기를 다시 최고합니다.
2. 위 기한내에 그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시·읍·면장 ○○○

직인

4101-1-17A  
1970.1.14 승인

190mm×268mm  
(신문용지 50g/m<sup>2</sup>)